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단42253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나6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단42253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유인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진수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분우

변론 종결 2019. 11. 7.

판결 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40,816원 및 그중 281,705,424원에 대하여 2018.7. 1.부터 2019. 1. 21.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이행보증보험계약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F사업 정수시설공사 활성탄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이후 변경된 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제1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018.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9%이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피고 C	E	281,705,424	2015. 5. 13. ~2016. 1.

2) 피고 D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피고 C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E은 2017. 1. 11.경 피고 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3. 2. E에 보험금281,705,424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들은 현재까지 보험금 281,705,424원 및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8.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8,335,392원의 합계금 290,040,81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제2이행보증보험계약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피고 C와 활성탄 자재납품 및 설치 시운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G	C	187,187,000	2015. 6. 15. ~2016. 7. 15.

2) 피고 C는 E과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7. 1. 12.경 G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8. 11.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C에, '피고 C의 대표이사내이사 피고 D이 G측과 함께 청탁을 하여 RSSCT 시험 결과를 조작하는 등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활성탄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16고합643,675(병합), 715(병합), 2017고합97(병합), 서울고등법원 2017노1530, 대법원 2017도19395,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보험자인 피고 C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0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제1, 2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및 상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원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1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40,816원 및 그중 281,705,424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인 2019. 1.2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제2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87,187,000원을 지급할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위 보험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281,705,424원을 동액 상당에서 상계한다.

2) 판단

피고들은 불량활성탄이 공급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고 C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자 사내이사¹⁾로서 G 측에서 불량활성탄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량활성탄을 E에 공급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이행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 C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제2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제1이행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E은 불량활성탄의 시험과정에 불법적인 관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E에 이 사건 약관 제10조 및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E에 지급의무가 없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일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주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보험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 뒤,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보증계약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보증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보증보험은 통상의 보험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의미의 우연성 또는 선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들 중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와 같이 위와 같은 우연성과 선의성에 바탕을 두고 있어 보증의 본질과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규정들은 특별한 사정, 즉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다던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보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1998. 3. 10. 선고 97다204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이행보증보험계약이 피고 C의 불법행위에 피보험자인 E이 공모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약관 제10조에서 규정한 E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형사판결에 의하면 E은 피고 D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활성화 납품대금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

1) 피고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피고 C가 아니고 피고 D이므로 피고 D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 C에 제2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피고 D의 불법행위를 피고 C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